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45

발의연월일: 2022. 8. 29.

발 의 자:김승남・김민기・김원이

김정호 · 김홍걸 · 유동수

이성만 • 이해식 • 조오섭

주철현 의원

제안이유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 개체식별 등을 실시하고, 출전 예고된 경주마와 출전준비소에 도착한 경주마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 된 말과 다른 말이 출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마사회 는 개체식별 등 단계에서 말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이에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하여 해당 경주마에 걸린 마권 판매액만 환불했으나,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면 말의 도착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마권 판매액도 환불할필요가 있음.

이에 출전한 말이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한 환급금 환수 과정에서 발생할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 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3.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말(이하 "출주마" 라 한다)과 다른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서 신	
<u>설></u>	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한 환급
	금 환수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해 제3호에 따
	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
	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
	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
	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말(이하
	"출주마"라 한다)과 다른 경
	<u> 우</u>
<u><신 설></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경우</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